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75
----------	----

2022. 10. 21.(금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박지현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2년 9월 30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4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0월 13일

-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지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도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, 상위법이 개정 되어 근거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용어를 도의 실정에 맞게 정비(안 제3조)

- “관리계획” → “종합관리계획”
- 상위법이 개정되어 근거 조문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(안 제3조)
 - “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” → “물환경보전법”

3. 검토보고 요지(김홍식 수석전문위원)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상위법령인 「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이 「물환경보전법」으로 개정되었고, 「수도법」근거 조문이 일부 변경되어 이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 및 용어를 도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상위법령 개정 및 일부 조문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, 도의 실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의 정당성이 인정됨.
-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제3조제1항 본문 중 “관리계획”을 “종합관리계획”으로 용어를 정비함.
 - 제3조제2항 본문 중 “「수도법」 제4조를 「수도법」 제5조로, ” 「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“을 ” 「물환경보전법」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함.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관련 부서: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“특이사항 없음”
- 본 조례안은 단순한 표현·자구를 변경하는 경우로써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4호에 해당하여 조례안 예고 생략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의 변경 사항 반영 및 일부 용어에 대하여 도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관리계획”을 “종합관리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수도법」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, 「하수도법」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「물환경보전법」 제49조에 따른 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물 재이용 <u>관리계획</u>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수도법」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, 「하수도법」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「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에 따른 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3조(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 ---- <u>종합관리계획</u>----- ----- --.</p> <p>② <u>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수도법」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, 「하수도법」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「물환경보전법」 제49조에 따른 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

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6조(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공업용수 수요 등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수의 공급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(이하 “물 재이용 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5. 3. 27., 2018. 12. 24.>

② 하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(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한다. <개정 2015. 3. 27.>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수도법」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, 「하수도법」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「물환경보전법」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3. 27., 2016. 1. 27., 2017. 1. 17., 2022. 1. 11.>

④ 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⑤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에는 5년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3. 27.>

⑥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3. 27.>